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97
------------	------

발의연월일 : 2016. 11. 23.

발의자 : 박완주 · 박재호 · 김종회

김정우 · 민홍철 · 위성곤

김영춘 · 윤관석 · 김해영

임종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하여 항만시설소유자로 하여금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항만에서의 범죄예방과 보안을 위한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법률에 설치 근거가 미흡하고, 현재 보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대부분은 형체식별조차 어려운 기기가 대부분으로 국가의 관문인 항만의 보안과 범죄예방에 취약한 실정임.

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정 수준의 해상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항만시설소유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항만에서의 범죄예방과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범죄 예방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보안에 필요한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해상도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지침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31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범죄 예방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보안에 필요한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 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해상도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지침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